

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

□ 법령명

-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-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6. 4. 23.

법 제 처

관보시스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요청 시 법제처와 협의한 입법예고기간을 엄수해 주시고, 입법예고기간 등 협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제처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단축 사유(국방부)

- 군 대상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복잡·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및 전문성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,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을 및 장기복무 지원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즉각적인 제고 방안 마련 필요
- 사이버전문인력의 획득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유인책으로, 고도의 사이버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'27년부터 역량강화비 지급 예정
- 다만, 현재 역량강화비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, 기획예산처는 예산 반영의 선결 요건으로서 법령상의 근거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
- 이에, 「국방정보화법 시행령」 제16조를 개정하여 국방사이버안전 전담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함 *시행령
- 법령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'27년 예산 반영이 불가하므로, '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완료 전까지 조문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
- 안 제14조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 완화 권고에 따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며, 그 외 개정사항은 기관 내부 행정집행 및 노후화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임 *시행령
-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개정으로 민원 신청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서식(별지 제2호)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그 외 다른 개정사항은 없음 *시행규칙
 - 시행령 개정으로 간소화되는 제출서류(사업자등록증명)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, 「전자정부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는 사항임

- 향후일정
 - 입법예고기간('26. 4. 28. ~ 5. 22.)
 - 차관회의('26. 5. 28.)
 - 국무회의('26. 6. 2.)

- 입법예고기간 : 각 24일간('26. 4. 28. ~ 5. 22.)

□ 검토 의견(법제처)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르면,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,
 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사이버전문인력의 획득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,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 완화 권고에 따라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.

- 위 주요 개정내용은 '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처의 의견과 민원 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등 국민의 권리 보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.

- 입법예고기간 : 각 24일간